

書面答辯書

- 질문 의원 : 배도순 의원
- 답변공무원 : 건축과장
- 질문 요지 : 건축위원회 관련사항

답변내용

-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 배도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건축위원회에 군의원을 위촉하여 심의시 지역에 불합리한 건축을 통제해야한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건축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중이용건축물(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m²이상) 및 16층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및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의 제한이나 조정등의 권한은 없습니다.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계획법 제3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으로, 도시계획 결정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밟고 도시계획법 제62조 및

이해관계인등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군도시 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지방군의회의 의원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군의회의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군건축위원회도 건축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의원님이 있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2002년 10월 11일

건축과장 권양웅



書面答辯書

- 질문 의원 : 박노설 의원
- 답변공무원 : 건설과장
- 질문 요지 : 하빈 감문1 배수장 공사비지급 관련사항

답변내용

-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 박노설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하빈감문1배수장 공사비지급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빈감문1배수장 공사비 지급 관련 사항으로 공사대가의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3항에 의하여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감문1배수장 공사비 지급은 2002년 5월 10일 시공회사의 청구에 의해 공정15%로 제1회 기성금 8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공사비를 지급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사업기간 내에 준공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2002년 10월 11일

건설과장 홍수박 (인) 